

구미시 시제품제작센터
위탁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구 미 시

구미시 시제품제작센터 위탁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1.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구미시 시제품제작센터 위탁운영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해 기업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임
- 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무명 : 구미시 시제품제작센터 위탁운영사업
-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1) 추진근거
 -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
 - 나)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 다)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조례」 제8조, 제9조
 - 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2) 필요성 : 시제품 제작 컨설팅, 시제품 제작, 특성평가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개발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필요

다. 위탁 사무 내용 : 구미시 시제품제작센터 위탁운영사업 업무 전반

- 1) 사업세부계획 수립,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선정평가
- 2) 제품 설계, 컨설팅, 특성평가(제품측정) 등 시제품 제작 지원 실시
- 3) 사업 추진 점검 및 사업 추진성과 검토

라. 위탁시설(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해당없음

마. 위탁기간 : 2026. 2.~12.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145백만원(시비)

(단위 : 백만원)

계	인건비	간접비	사업비	비고
145	22	7	116	

사.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회 심의(251226)

아. 위탁구분 : 재계약 (수탁기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3. 부서 의견

-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

나)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다)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조례」 제8조, 제9조

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편성

다.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라.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 감사결과

: 2025년도 성과평가 및 감사 미시행(관련 조례 2026. 1. 1. 시행)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제6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6.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기존의 위탁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경우
2. 기존의 위탁사무의 예산이 작년 대비 혹은 동의안 대비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조례」

제8조(혁신역량 등 강화·활성화) 시장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에 기반을 둔 창업 및 업종전환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보육센터, 시제품생산공장, 산업기술정보센터, 지식재산센터, 국방벤처센터, 뷰티기기 사업화 지원센터, 예스구미캠퍼스 등 운영
2.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3. 산학연 지원시설 및 인프라 구축

4. 나노산업, 첨단산업, 신성장동력산업, IT융합산업 등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관련사업 추진) 시장은 관련사업의 효율적 병행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해당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구미시 시제품제작센터 위탁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구미시 시제품제작센터 위탁운영사업 위탁 시 사업
운영으로 인한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인건비는 2025년 참여인원의 2025년 1월 기준 대표단가의 평균값
으로 산정하였음

나. 사업비는 시제품 제작지원 수요를 참고하여 산정하였음

3. 비용추계의 결과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인건비	22	22	22	22	22
○간접비		7	7	7	7	7	35
○사업비		116	116	116	116	116	580
소계		145	145	145	145	145	725

4. 재원조달 방안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도비		-	-	-	-	-	-
시비		145	145	145	145	145	725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145	145	145	145	145	725

5. 부대의견 : 위탁금의 상세내역은 사업계획 등에 따라 조정 가능

6. 작성자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박지나(☎480-613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 분	금액(천원)	산 출 근 거
합 계	145,000	
인 건 비	22,000	· 참여직원 인건비 11,000천원×2명=22,000천원 ※ 2025년 1월 대표단가(차등)×참여기간(11개월)×참여율(차등)
간 접 비	7,000	·기관 공통경비 7,000천원
사 업 비	116,000	· 시제품제작지원비, 시약재료구입비 등 111,800천원 · 회의비 등 4,200천원

소 관 부 서		기업지원과
입 안 자	과 장	권 미 영
	팀 장	공 민 정
	담 당 자	박 지 나 (480-6132)